

# 위원회 설치 규정

제정 1993. 10. 26.  
제2차 개정 2013. 04. 26.

**제1조(목적)** 이 규정은 본 대학교의 각종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**제2조(적용범위)** 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여하는 법령 또는 정관, 학칙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이 규정에 정하는 바에 의한다.

**제3조(설치)** ① 위원회를 설치하고자 하는 부서장은 위원회의 기능, 구성 및 기타 필요한 사항을 명시하여 기획처에 요청하여야 한다.  
② 기획처장은 위원회의 설치 여부를 심사한 후 총장의 재가를 받아야 한다.  
③ 위원회 설치의 승인을 얻은 부서장은 제규정기본규정 제5조에 따라 당해 위원회에 관한 규정입안서를 작성하여 기획처로 제출하여야 한다.

**제4조(구성)** ① 위원회는 위원장 및 약간명의 위원으로 구성한다.  
②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회무를 통리한다.  
③ 위원장 및 위원은 관계 부서장의 제청으로 총장이 위촉하며 임기는 2년이내로 한다. (개정 2012.11.30)  
④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경우에는 관계 부서장의 제청으로 총장이 위촉하는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.

**제5조(회의)** ①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과반수의 요구가 있을 때에 위원장이 소집한다.  
②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.  
③ 위원장은 부의안건의 내용이 경미하거나 또는 긴급을 요하는 경우 별첨 1과 같이 서면 또는 전자문서로서, 각 위원회에서 별도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위원회의 의결을 대신할 수 있다. 단,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이 정식으로 위원회에 회부할 것을 요청할 때에는 이에 따른다. (개정 2013.4.26)

**제6조(보고)** 위원장은 위원회에서 심의한 사항을 총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.

**제7조(회의록)** ① 위원회는 회의록을 작성 비치하여야 한다.  
② 회의록에는 위원장을 포함한 출석위원 과반수가 서명 날인하여야 한다.

**제8조(간사)**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되 관계부서의 직원 중에서 총장이 임명한다.

## 부칙

제1조(시행일) 이 규정은 1993년 10월 26일부터 시행한다.  
제2조(경과규정) 이 규정 시행 당시 이미 설치된 위원회는 이 규정에 의하여 설치된 것으로 본다.

**부칙 (기획예산부-1787, 2012.11.30)**  
이 규정은 2012년 11월 30일부터 시행한다.

**부칙 (기획예산부-238, 2013.4.26)**  
이 규정은 2013년 04월 26일부터 시행한다.

별첨1)

## 00000 위원회 서면 결의서

1. 위원장 및 위원명 :

2. 서면결의 요청 일자 :

3. 안건 및 내용

1) 제1호 안건 :

-

2) 제2호 안건 :

-

4. 결의 결과

\* 찬성 또는 반대의 표시가 없는 경우 반대로 간주함

1) 제1호 안건 :

성 명	찬성	반대	결의일	참조의견

2) 제2호 안건 :

성 명	찬성	반대	결의일	참조의견

20 . . .

위원장 :	(서명)
위 원 :	(서명)
위 원 :	(서명)
위 원 :	(서명)

◎ 위원회의 서면결의서는 필요시 변경하여 사용할 수 있음. 다만, 위 사항은 반드시 포함하여야 함